

 미래창조과학부	보도자료	 79 공백70년 위대한 역경 새로운 도약	
보도일시	2015. 6. 23.(화) 조간(온라인 6. 22. 12:00)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시	2015. 6. 22.(월) 9:00	담당부서	정보보호기획과
담당과장	홍진배(02-2110-2110)	담당자	변상준 사무관(2917)

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 블루오션으로 본격 키운다.

- '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' 6.22일 제정 공포 -
- 미래부, 법률 제정 완료에 따라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에 본격 착수 -

-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양희)는 사이버공격 대응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로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해온 “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”(이하 “정보보호산업진흥법”)이 **6월 22일 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.**(법률 제13343호)
- 정보통신기술(이하, 'ICT')이 발전되는 만큼 사이버위협도 동반하여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위와 안전한 ICT 성장을 위해서 '사이버방위산업'이자 '사회안전산업'이고 '미래 신성장산업'인 **정보보호산업의 수요·공급 측면을 종합 반영한 법체계를 마련**하였는데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.
-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, 수요측면에서 **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**하였다.
 - ※ (정보보호산업 선순환 생태계)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 확보→ 정보보호 기업 재무구조 개선→정보보호 기업 종사자 처우개선→우수인력 확보→기술경쟁력 제고

- 1 -

- 첫째, 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 구매 정보를 정보보호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및 제품 수요를 예측 가능하여 이를 기술개발, 생산 등에 반영하고, **정보보호투자의 수요개발 및 시장 예측성에 기여**하도록 하기 위하여, '공공기관등의 구매수요정보의 제공'(제6조)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둘째,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**제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**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순환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, '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'의 지급노력 및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'발주 모니터링체계의 운영' 등을 규정하였다(제10조).
- 셋째, 의무적 정보보호 조치에서 벗어나 **기업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**하기 위하여 '정보보호 준비도 평가' 및 '정보보호 공시'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(제12조, 제13조).
 - *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·인력, 정보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
 - **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,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
 이를 통해,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평가하고,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수준 제고 효과를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- 공급측면으로는 **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 기반조성**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.
 - 첫째, **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조성을 강화**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'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'를 규정(제3조)하고, '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'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(제5조). 이를 통해,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및 정보보호투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,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보보호

- 2 -

투자를 하도록 하고, 정보보호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○ 둘째,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**정보보호기업 및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**를 위하여 ‘국제협력 추진’(제16조) 및 ‘성능평가 지원’(제17조)을 강화하고 ‘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’(제18조)과 ‘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’(제19조) 신규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.

○ 셋째, 정보보호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기초요소인 **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** 하기 위하여 ‘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’(제14조), ‘인력양성’(제15조), ‘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’(제11조)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.

□ 미래부는 법제정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, **다양한 융합분야에 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**되어 ‘19년까지 시장 2배 확대와 신규 고용창출 약 20,000여명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.

※ 정보보호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해 2,097억 달러, 향후 연평균 성장률은 10.5%로 지속적인 강세 예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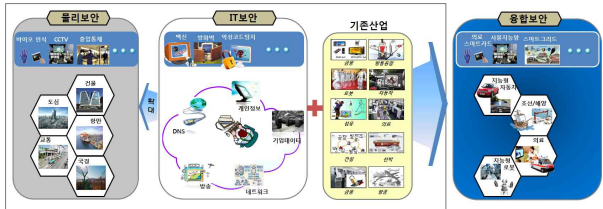
○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후속 법령체계 마련 및 산업진흥 사업들을 마련하여 정보보호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.

붙임1 정보보호산업의 범위 및 산업현황

□ (개념) 정보보호산업은 기술의 적용영역,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
 ○ ‘정보보안’, ‘물리보안’, ‘융합보안(정보보안+물리보안, 정보보안+he산업)으로 분류

해킹/침입탐지 개인정보유출방지 컴퓨터포렌식 등	영상감시 바이오인식 무인전자경비 등	운송보안(자동차/항공등) 의료/건설/극형 보안 방범보안로봇 등
정보보안(클린인터넷경제)	물리보안(안전안심생활)	융합보안(안전성장화)

□ (동향) 암호·인증·인식·감시 등의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정보보안에서 소산업 분야에 확산되는 융합보안으로 발전



※ 융합보안 분야 사례 : 차량 간 통신 보안기술, 차량 내부시스템 보안기술, 의료단말기 제어시스템 보안기술, 공항·항만 관제시스템 보안기술

□ 정보보호산업의 특징

- 사이버테러 위협·과괴력 증가로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**사이버방위산업**
- 보안사고 발생시 개인·사회·국가 등 **수 영역에 파급력 多大**
- 사이버 공간 생활 비중 확대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**사회 안전산업**
- “창과 방패”처럼, 끝없이 진화·발전하는 **미래 新성장산업**
- 최근 **소산업의 ICT화**로 대부분의 산업에 보안기술 적용이 요구

- **(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)** 정보보호 산업진흥계획을 마련하고,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정보보호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

※ 관련조항 : 제5조(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), 제6조(구매수요정보의 제공), 제10조(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) 등

- **(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제고)** 정보보호 제품의 성능평가를 지원하도록 하고, 연구개발 지원 및 클러스터 조성, 융합형 정보보호 시범사업, 전문인력 양성, 국제협력 추진, 자금융자, 세제지원, 수출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**국내 정보보호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**

※ 관련조항 : 제17조(성능평가 지원), 제11조(정보보호산업의 융합촉진), 제14조(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), 제15조(전문인력 양성), 제16조(국제협력 추진), 제20조(자금융자), 제21조(수출 지원), 제22조(세제 지원) 등

- **(민간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수요 확대)** 민간부문의 정보보호투자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,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

※ 관련조항 : 제12조(정보보호 준비도 평가), 제13조(정보보호 공시) 등

- **(정보보호 시장의 가격 왜곡 개선)**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해, 제값을 주고받지 못함에 따라 대가산정 구조개선 및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한계 극복

※ 관련조항 : 제8조(사업 하도급의 승인), 제10조(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) 등

- **(정보보호 산업 분쟁 조정 및 이용자 보호)**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산업분쟁조정을 처리하고,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

※ 관련조항 : 제4장(분쟁조정위원회, 제25조~제33조), 제34조(이용자의 보호시책 등), 제36(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) 등

- **(정보보호 산업 성장)** 정보보호 시장규모를 '19년까지 현재의 2배 규모로 확대

- 정보보호 시장규모를 '19년까지 7.6조→15조원(수출 1.5조→4.5조원), 고용 창출 인력도 36,000명→55,000명으로 증가



□ 입법취지

- 지능화·고도화 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을 심각하게 저해
- 또한 사물인터넷 제품의 보안을 위한 융합보안 기술 및 인력이 태부족 하며, 사물인터넷 제품들의 보안 허점이 일상생활 안전 및 국민의 생명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
- “정보보호산업진흥법” 제정으로 정보보호산업의 기초체력을 향상하고, 정보보호 新시장 창출을 위한 융합형 정보보안 추진 동력을 제고하고자 함

□ 추진경과

- '14.7월, 법안 국회 제출(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제출)
- '15.2월, 미방위 법안 공청회 개최
- '15.4.27, 미방위 의결
- '15.5. 6, 법사위 의결
- '15.5.29, 국회 본회의 의결

□ 주요내용

- 정보보호, 정보보호산업, 정보보호 기업 및 이용자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(제2조).
-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

- 7 -

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5조).

- 정보보호와 관련한 공공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정보보호 구매수요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(제6조).
- 공공기관등은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한 적정 수준의 대가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,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당한 발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함(제10조).
-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(제11조).
-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제12조).
- 정보보호시스템 수요 확대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(제13조).
-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 개발, 투자 촉진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(제14조).
-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고, 미래인재 발굴, 정보보호 융합 촉진 전문가 양성·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제15조).
-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제품 및 기술 등의 품질확보·유

- 8 -

통촉진·이용자 보호·융합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제17조).

-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우수 정보보호제품·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고, 우수 정보보호 기업을 지정하여 자금융자, 전문 인력양성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제18조부터 제22조까지).
-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지정·관리할 수 있도록 함(제23조)
-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보보호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(제24조).
- 정보보호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·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(調停)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(제25조부터 제33조까지).
- 정부는 정보보호 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 관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음(제36조).
-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·물리적·기술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(제37조).